

case
6

파이프 렌치

요약

사례명	파이프 렌치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사례번호	NY N332258 (2023.04.21.) 및 NY N332515 (2023.05.08.)	
사실관계	공통사항 한국 및 중국에서 생산된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 기타 부품을 중국에서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미국에 수출	
	① NY N332258 한국 • 손잡이, 조절 조 생산 후 중국 수출 중국 • 고정 조, 조절 너트 생산 •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 • 상기 4개 부품과 기타 부품 결합 조립 • 미국으로 수출	② NY N332515 한국 •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 생산 후 중국 수출 중국 •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 • 상기 4개 부품과 기타 부품 결합 조립 •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공통사항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는 기능적 측면에서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임	
	① NY N332258 실질적 변형 여부 한국산 부품의 용도는 이미 정해져 있으나 완성품 상태는 아니었고, 중국에서 추가적 가공과 다른 핵심 부품의 결합을 통해 완성품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중국산)	② NY N332515 실질적 변형 여부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들이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었고, 해당 부품들은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파이프 렌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한국산)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⁴⁾

사 례 명 [파이프 렌치]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사례번호 NY N332258 (2023.04.21.) 및 NY N332515 (2023.05.08.)

사실관계

요청자	Weihai Maxpower Advanced Tool Co., Ltd.	
제품명	• 파이프 렌치 (Pipe Wrench)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잡이 / 조절 조 / 고정 조 / 조절 너트 / 핀, 스프링 등 • 톱니가 있는 두 개의 조를 가지고 있으며, 조절 너트를 이용해 파이프에 밀착하여 고정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용도	• 배관 부품의 조립 또는 해체 시 도구로 사용	

제조과정 (㉠ NY N332258)



상세공정

<p>한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 알루미늄 원재료로 손잡이 생산 2. 중국산 강철봉을 가공하여 조절 조 생산 3. 손잡이 및 조절 조 중국으로 수출
<p>중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중국산 강철봉을 가공하여 고정 조 생산 5. 중국산 강철튜브를 가공하여 조절 너트 생산 6.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밀링, 열처리, 드릴링, 코팅) 7. 중국산 핀, 스프링 등과 함께 최종 조립 8. 작동 테스트 및 포장 후 미국 수출

4)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제조과정 (© NY N332515)



상세과정

- | | |
|---|--|
| 
한국 | 1. 한국산 알루미늄 원재료로 손잡이 생산
2. 중국산 강철봉을 가공하여 조절 조 및 고정 조 생산
3. 중국산 강철튜브를 가공하여 조절 너트 생산
4.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및 조절 너트 중국으로 수출 |
| 
중국 | 5.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밀링, 열처리, 드릴링, 코팅)
6. 중국산 핀, 스프링 등과 함께 최종 조립
7. 작동 테스트 및 포장 후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실질적 변형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 실질적 변형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이러한 평가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립 작업이 단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관련 법령 및 분석

NY N332258 판정 결과

- ☑ 파이프 렌치는 크게 손잡이, 고정 조, 조절 조, 조절 너트로 구성되며, 고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절 너트를 조작하여 두 개의 조를 조여야 하므로 기능적 측면에서 상기 부품들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생산된 손잡이와 조절 조가 파이프 렌치에 사용될 용도로 제작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파이프 렌치의 일부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 대략적인 형태만 갖춘 손잡이와 조절 조가 중국으로 운송되어 추가 가공 후, 중국산 고정 조, 조절 너트, 기타 부품과 조립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이프 렌치의 원산지는 중국산이라고 판정함

NY N332515 판정 결과

- ☑ 한국에서 생산된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및 조절 너트는 파이프 렌치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들임
- ☑ 해당 부품들은 한국에서 파이프 렌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산지는 한국이라고 판정함

결론

- ✓ ㉠ (NY N332258 사례) 파이프 렌치의 원산지는 중국임
- ✓ ㉡ (NY N332515 사례) 파이프 렌치의 원산지는 한국임

III 시사점

- 공구류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여러 부품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모든 부품들이 동등하게 중요할 경우, 각각의 부품이 생산된 국가, 기능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다만, CBP는 동일 물품이라 할지라도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상이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2258 (2023.04.21.), <https://rulings.cbp.gov/ruling/N332258>
- CBP Ruling NY N332515 (2023.05.08.), <https://rulings.cbp.gov/ruling/N332515>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